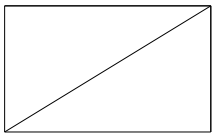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10호
의 결 년 월 일	2019. 3. 29. (제279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제출년월일	2019. 3.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안 제3조)

다.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19. 3. 13. ~ 4. 1.) 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방안을 정하여 광진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관련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으로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 20인 이상 동호인들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뚝섬한강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체육시설을 대관하고 지출한 전체 비용의 50%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사용료 지원	147,597	147,597	147,597	147,597	147,597	737,985
	소계(b)	147,597	147,597	147,597	147,597	147,597	737,985
□ 총 비용(a-b)		-147,597	-147,597	-147,597	-147,597	-147,597	-737,9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147,597	147,597	147,597	147,597	147,597	737,985
합계		147,597	147,597	147,597	147,597	147,597	737,985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유철호(T.450-758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대관료	20인 이상	50% 지원시	비고
계	316,193	295,193	147,597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82,593	282,953	141,477	
뚝섬한강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33,600	12,240	6,120	

〈 관 계 법 령 〉

법규명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법규명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방안을 정하여 광진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진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현 행	개 정 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그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필요한 경비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관련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